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의결주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7502호, 시행 2022. 4. 21.)되면서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가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제5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상업등기법」 제30조에 따른 상호등기의 영업소 소재지는 더 이상 담보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니므로 관련 부분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삭제)
- 자연인인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변경되어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 담보권설정자는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 또는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

고,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할 때에는 주소증명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취지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발급에 표시되어야 하고,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시 등기소는 먼저 직권으로 주소 변경등기를 하고 관할을 넘겨받는 조치 후 신청 사건을 처리함(안 제5조의2 신설)

-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의 발급 대상자인 ‘법인·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분을 삭제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상업등기법」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면등으로 변경함(안 제29조제1항제1호나목)
- 담보권설정자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서면등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제3의2호를 반영함(안 제33조제1항)
- 상호등기부상 변경사항이 담보등기부에 반영될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상호등기부 부분을 삭제함(안 제36조제2항)
- 담보권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을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으로 변경함(안 제45조제1항제1호)

- 다른 증명과의 유효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명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함(안 제46조)
- 제56조를 제56조의2로 하고, 제56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규칙」 준용 조항을 신설함(안 제56조 신설)
-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사건의 관할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관할 및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종전 관할이 유지되고, 영업소 소재지와 현재 주소가 다른 경우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주소증명서면등을 첨부하여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지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발급에 표시되어야 하고,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시 등기소는 먼저 직권으로 주소 변경등기와 상호·영업소 말소등기를 하고 관할을 넘겨받는 조치 후 신청사건을 처리함(안 부칙 제3조)
- 「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제1항 “법인·상호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개정함(안 부칙 제4조)
- 별지로 규정하고 있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등기기록 양식에서 상호 및 영업소를 삭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세로양식 등기

기록으로 변경함(안 별지 제2호, 제4호 양식)

- 별지로 규정하고 있는 등기기록 양식을 세로 양식으로 변경함(안 별지 제1호, 제3호 양식)

#### 4.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관할의 변경)”을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의 관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담보권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의 관할) ① 자연인인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변경되어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 담보권설정자는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 또는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설정자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등에 따라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증명된 경우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관할 변경조치를 한 다음, 제1항의 신청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주소 변경등기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종전 관할 등기소로부터 넘겨받는 조치

④ 법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발급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법인·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을 “아무런”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담보권설정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면등

② 담보권설정자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자신의 현재 주소가 해당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곳임을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법 제47조제2항제1호”를 “법 제47조제2항제1호, 제3의2호”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법인등기부나 상호등기부상”을 “법인등기부상”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담보권설정자인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를 “담보권설정자의 「인감증명법」 제12조 또는”으로 한다.

제46조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56조를 제56조의2로 하고,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준용규정) 담보등기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관할 및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마쳐진 담보등기로서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영업소 소재지 기준의 종전 관할이 유지되고, 상호 및 영업소의 기록사항은 담보권설정자부의 주소란 하단으로 옮겨 표시된다.

② 담보권설정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법 제39조제2항의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담보권설정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또는 법 제39조제2항의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설정자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권설정자의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동일한 경

우에도 같다.

④ 제3항의 서면등에 따라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증명된 경우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관할 변경조치를 한 다음, 제2항의 신청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주소 변경등기(제3항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영업소 말소등기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종전 관할 등기소로부터 넘겨받는 조치

⑤ 법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발급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제1항 중 “법인·상호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 양식]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동산담보 등기기록

등기 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상호 /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 주사무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담보권자 및 기타사항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기타사항

[별지 제2호 양식] 담보권설정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동산담보 등기기록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담보권자 및 기타사항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기타사항

[별지 제3호 양식]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채권담보 등기기록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상호 /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 주사무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담보권자 및 기타사항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목적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기타사항

[별지 제4호 양식] 담보권설정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채권담보 등기기록

등기고유번호 0000-000000      등기일련번호 000000

【 담 보 권 설 정 자 】 (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				
표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

【 담 보 권 】 ( 담보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담보권자 및 기타사항

【 담 보 목 적 물 】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목적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기타사항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설정자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등에 따라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증명된 경우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관할 변경조치를 한 다음, 제1항의 신청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주소 변경등기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종전 관할 등기소로부터 넘겨 받는 조치

④ 법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발급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2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동산담보등기 및 채권담보등기별로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1. ~ 3. (생략)

제2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인·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한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제29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또는 등기권리자(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의 특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등을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1.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

가. (생략)

나.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및 영업소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등

2.·3. (생략)

<신설>

4. 아무런 -----  
-----  
-----  
-----  
--

제29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 ① -----  
-----  
-----  
-----  
-----  
-----  
-----  
-----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담보권설정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면등

2.·3. (현행과 같음)

② 담보권설정자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자신의 현재 주소가 해당



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45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 담보권설정자인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증명

2. (생략)

② (생략)

제46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  
-----  
-----  
-----

제45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  
-----  
-----  
-----  
-----

1. ----- 담보권설정자의 「인감증명법」 제12조 또는 -----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  
-----  
-----

<신 설>

제56조(준용규정) 담보등기와 관  
련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  
한다.

제56조 (생 략)

제56조의2 (현행 제56조와 같음)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78